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542
----------	-----

제출년월일 : 1999. 5.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사유

-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하는 계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함.

2. 주요골자

- 탁노소설치·운영및 설치 우선지역 (안 제2조)
-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설정 (안 제4조)
-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안 제5조)
- 탁노소설치·운영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안 제7조)
-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안 제8조)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 참고사항 : 표준안시달[사회65246-10046('99. 2. 8)]

4. 본문

- 불임과 같음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한다.
5. 난방장치는 절약형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약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계 관할 읍,면장(당연직)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 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인, 맞벌이가정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협의회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검토

제8조(비용의 수납) ①시설의 정상 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수납 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③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